

경북 울진군 울진읍
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에이동 103호

원고(상고인
)

임그루



36322

2060718 - 058489 ↓

(민사과 민사2부(자))

2017-005-53531-006

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법원

2017다 53531 기타(금전)

예정 기일 :

담당재판부 : 민사2부(자)

법원사무관 최화선

직통 전화 : 02-3480-134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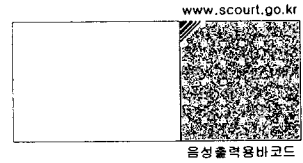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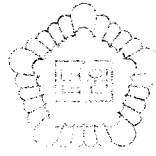
팩 스 : 02-533-4484

e-mail :

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
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(송달과 확정내역 포함)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

(<http://www.scourt.go.kr>) '나의사건검색' 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(<http://www.courtauction.go.kr>)
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17다53531 기타(금전)

원고(재심원고), 상고인

임그루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, 다세대주택 에이동 103호

피고(재심피고), 피상고인

케이티 노동조합

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(정자동)

대표자 위원장 김해관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7재나698 판결

주 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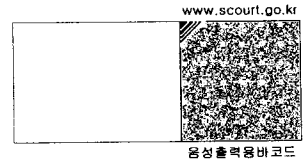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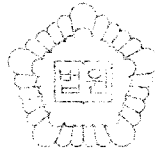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



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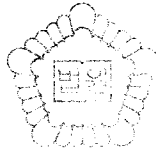


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8. 3. 15.

재판장	대법관	조재연	<u>조재연</u>	
	대법관	고영한	<u>고영한</u>	
주심	대법관	김소영	<u>김소영</u>	
	대법관	권순일	<u>권순일</u>	





정본입니다.

2018. 3. 16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최화선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